

2020년도 제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4. 29.(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재화,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6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정현순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68건(안건번호 제2020-15879호~1711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5879호, 15880호는 자막공유 사이트에 최신 영화의 우리말 자막파일이 게시된 사안임. 해당 영화의 국내 배급사가 신고한 점, 자막파일이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5881호는 블로그에서 “●●●● ●●●● ●●●●●”는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이 비밀댓글로 작성되어 실제로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나 비밀댓글에 대해 비밀답변이 달려 있어 교환의 정황증거로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안건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건번호 제2020-15882호~15885호, 15887호, 15889호, 15890호, 15895호, 15899호, 15902호, 15903호, 15906호~1590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과 제품키, 크랙파일 등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5886호, 15888호, 15891호~15894호, 15896호~15898호, 15900호, 15901호, 15904호, 1590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라이선스 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크랙 프로그램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21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6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정현순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 5쪽의 게시물 제목, 민원 신고 내용, 게시물 내용, 상품태그, 6쪽의 게시물 제목, 7쪽의 후기 내용, 9쪽의 저작물명, 사이트명, 10쪽의 사이트명, 목록, 저작물명, 등록대행자명, 회사명, 게시물 제목, 11쪽의 게시물 내용, 13쪽의 위원님 성함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8쪽~24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민원 신고 내용과 관련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종전과 같이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면 될 것으로 보임.
- B 위원: 동의함.

- C 위원: 같은 의견임.
- D 위원: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게시물 제목, 민원 신고 내용, 게시물 내용, 상품태그, 후기 내용, 저작물명, 사이트명, 목록, 등록대행자명, 회사명, 위원님 성함은 비식별 처리함.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8쪽~24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정현순 전문위원: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B, C, D, A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사항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정현순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20-15879호~17119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768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5879호,

15880호는 권리자인 민원인이 신고하여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한 총 2개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자막공유사이트의 이용자가 민원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해외영화의 자막 파일을 무단 전송하였음.

(민원 신고 내용을 보여주면서)민원인은 '★★★★★★★★'을 제출하였음. 해당 자료의 '◇◇ ◇◇ ◇◇◇(◇◇◇ ◇◇)'은 민원인 정보와 일치함.

(영화 정보 자료를 보여주면서)영화 '○○○○ ○○'는 2020. 3. 26. 개봉하였고,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임. 영화 '■■■■'은 2020. 1. 1. 개봉하였음.

(안전번호 제2020-15880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영화 '■■■■'의 자막 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⓪⓪⓪ ⓪⓪⓪"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게시글 하단에는 해당 영화의 DVD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보임.

(안전번호 제2020-15879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영화 '○○○○ ○○'의 자막 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해당 영화와 관련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⓪⓪⓪ ⓪⓪⓪"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C 위원: "⓪⓪⓪ ⓪⓪⓪"이라는 표현에서 '▼▼▼'이라 함은 불법복제물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생각함. 해당 자막 파일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로 보임.
- B 위원: 해당 자막공유사이트 상단에 '저작권보호센터'라는 메뉴가 보임.
- 정현순 전문위원: ('저작권보호센터' 메뉴를 클릭하면서)하단의 메뉴에 '온라인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권리자로부터 온라인 보호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의 권리자 정보가 일치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심의위원회는 직접증거 없이 댓글 내용, 댓글 개수와 같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만으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할 수 있음. 다만 불법복제물 전송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한편, 저작권법에 따라 공중에게 저작물을 이용 제공하는 경우라야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은 비밀댓글로 작성되어 실제로 배포, 전송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아니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이 모두 비밀댓글로 되어 있어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비밀댓글에 대해 비밀답변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댓글에 응답한 것으로 보임. 게시자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어 시정권고를 부결했던 그동안의 심의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비밀댓글 형태로 시정권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 ◆◆◆◆◆ ◆◆◆◆ ◆◆◆◆◆.”라는 내용이 있어 비밀댓글로 불법복제물을 거래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 있고, “비밀 댓글입니다.”로 비밀댓글에 대한 답변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고 생각한다.

- C 위원: 종전의 심의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정권고가 부결되었던 사안들은 비밀댓글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 정현순 전문위원: 해당 사안들에 비밀댓글이 존재하였으나 내용 확인이 되지 않아 시정권고를 부결했었음.
- C 위원: 해당 사안과 비슷한 예로 이메일로 음원을 전송하여 주겠다는 게시물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전송된 사실은 파일을 보냈다는 취지의 댓글로 확인하는 것으로 정함”으로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비밀댓글의 존재만으로는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 어렵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다만 안전번호 제 2020-15881호는 다수의 비밀댓글이 존재하는 사안임. 실제 불법복제물의 교환이나 판매가 이뤄진 흔적으로 짐작할 수도 있어 보임. 해당 안전에 대해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함이 어떠한지?
- B 위원: 해당 안전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에 동의함. 그동안 심의위원회에서는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에 대한 소명 기준을 갖고 있었음. 다만 게시자들이 비밀댓글을 통해 회피 설계를 하는 것으로 보여 종전의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에 대한 소명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C 위원: 종전에 부결해왔던 사안들 중에서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비밀댓글로 문의해달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안은 없던 것으로 기억함.
- 정현순 전문위원: 1기 심의위원회 때는 있었음.

- B 위원: 해당 사안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할 때 기존 사례들을 유형화 해서 비교할 수 있었으면 함.
- C 위원: 해당 사안은 게시자와 블로그 이용자들이 비밀댓글을 달고 있어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음. 기술 발전에 따라 불법을 자행하고 빠져나가는 이용자들이 많으니 범의유발형이 아닌 기회제공형이라면 입증의 편의나 관련 증거 채증을 위해 함정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정현순 전문위원: 작년에 헌법, 행정법 전공 교수님들을 모시고 연구반을 운영하였을 때 완전 폐쇄형 사안과 관련하여 운영자에게 허위 정보를 주고 가입하여 들어가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있었음.
- D 위원: 보호원이 함정수사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C 위원: 앞으로 함정수사에 대한 문제제기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 정현순 전문위원: 함정수사의 적법성 관련 문제로 보호원에서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1588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해당 사안은 비밀댓글이 다수 존재하여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D 위원: 안전번호 제2020-15881호는 판단 기준에 대해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B 위원: 불법복제 정보에 대한 기준을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A 위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881호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정현순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15882호~1590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총 28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오토데스크사의 'Inventor', 'AutoCAD', '3DS MAX', 'Navisworks', 어도비사의 'Premiere Pro', 'Master Collection', 'After Effects', 'illustrator', 'Photoshop', 구글사의 'SketchUp pro', 로버트 맥널 앤드 어소시어츠사의 'Rhino',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ffice',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등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함.

어떤 온라인 게시물이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한 경우라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Inventor, CAD, 3DS MAX, Navisworks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오토데스크', Premiere Pro, Master Collection, After Effects, illustrator, Photoshop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어도비', SketchUp Pro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구글', Rhino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로버트 맥널 앤드 어

소시어츠,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한글과컴퓨터'는 각 홈페이지에서 1개월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안건번호 제2020-15882호~15885호, 15887호, 15889호, 15890호, 15895호, 15899호, 15902호, 15903호, 15906호~15909호는 자동인증, 크랙파일 또는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15886호, 15888호, 15891호~15894호, 15896호~15898호, 15900호, 15901호, 15904호, 15905호는 라이선스 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크랙 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게시물들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함.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이용자들이 비용을 지급하고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상업용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무료 이용 후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일부 기능을 제한하여 무료로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15882호~1590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자동인증, 크랙파일 또는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들은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건들은 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D 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안전번호 제2020-15886호, 15888호, 15891호~15894호, 15896호~15898호, 15900호, 15901호, 15904호, 15905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고 생각함. 그 외에 안전들에 대해서는 시정권고함이 타당함.
- A 위원: 같은 의견임. 안전번호 제2020-15882호~15885호, 15887호, 15889호, 15890호, 15895호, 15899호, 15902호, 15903호, 15906호~15909호는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882호~15885호, 15887호, 15889호, 15890호, 15895호, 15899호, 15902호, 15903호, 15906호~1590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15886호, 15888호, 15891호~15894호, 15896호~15898호, 15900호, 15901호, 15904호, 1590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정현순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5910호~17119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시어 심의시스템의 데드카피를 직접 확인해주시기 바람.
(만화 ‘약속의 네버랜드 (출판 : 학산문화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6007호는 웹하드에서 ‘약속의 네버랜드 1~58화, 번외 2화 포함’ 압축 파일을 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jpg 파일로 이용 가능함. '약속의 네버랜드' 1화는 2017. 12. 21. 출간되었고, 총 15권으로 미완결임. 합법저작물 단권 판매가는 약 2,700원임.

(방송 '얼터드 카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6051호는 웹하드에서 '얼터드 카본' 시즌 1을 1,23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물은 넷플릭스에서 2018. 2. 2.부터 2018. 2. 2.까지 방영한 총 10부작의 미국 드라마임. 해당 드라마의 원작은 소설임.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음악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거야 (가수: 장범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6223호의 음원파일은 2019. 8. 23. 발매된 곡으로 앨범 '멜로가 체질 OST Part 3'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해당 곡의 mp3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해당 음원파일은 2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영화 '신비아파트 극장판 하늘도깨비 대 요르문간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6305호는 2019. 12. 1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88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네이버 시리즈on'에서 5,000원에 대여, 9,900원에 구매 가능함.

(영화 '스파이 지니어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6411호는 2020. 1. 22.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5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네이버 시리즈on'에서 10,900원에 구매 가능함. 해당 영상물은 우리말 더빙 버전임.

(영화 '1917'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6472호는 2020. 2. 1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54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8.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31.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6642호는 2020. 2. 1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92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8.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4. 7.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영화 '마이 스파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6900호는 2020. 4. 2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9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9.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상물에는 자체 번역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영화 '건즈 아킴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6985호는 2020. 4. 15.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84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8.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네이버 시리즈on'에서 10,000원에 구매 가능함.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음악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가수: 조이 (JOY))'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7042호의 음원파일은 2020. 3. 20. 발매된 곡으로 앨범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PART2'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2020년 04월 21일 멜론 실시간 TOP 100'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100곡의 음원 파일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은 9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참고로 해당 원곡 실연자는 '베이스스'임.

(음악 '덤더럼(Dumhdurum) (가수: Apink (에이핑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7056호의 음원파일은 2020. 4. 13. 발매된 곡으로 앨범 'LOOK'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신곡] Apink-LOOK'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해당 앨범의 수록곡인 7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은 2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15910호~1711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작지 않아 보임.

- D 위원: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모두 데드카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음.
- C 위원: 동의함.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910호~17119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881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전번호 제2020-15886호, 15888호, 15891호~15894호, 15896호~15898호, 15900호, 15901호, 15904호, 15905호는 부결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20-15879호, 15880호, 제2020-15882호~15885호, 15887호, 15889호, 15890호, 15895호, 15899호, 15902호, 15903호, 15906호~15909호, 15910호~1711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5. 6.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